

대구광역시 달성군 북카페 두런두런 관리 및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1814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0. 4. 9.

제 출 자 : 달성군수

1. 제안이유

창조문화바람 High-Five(5) 현풍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되는 북카페 두런두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 운영 및 관리의 효율을 기하고 생활문화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는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인프라를 구축하여 원도심 활성화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을 규정(안 제1조)
- 나. 북카페의 수행 기능과 전반적인 운영방향, 문화강좌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(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)
- 다. 사용료 등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과 주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)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5조(※ 붙임)
- 나. 예산조치 : 2020년도 본예산 184,272천원 반영
- 다. 기타

- (1) 부서합의 : 2019. 8.(기획예산실, 자치행정과, 현풍읍)
- (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(3)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평가 : 2020. 1.
- (4) 비용추계서 : 첨부 1
- (5)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(심의) : 2020. 3.
- (6) 입법예고(2020. 2. 10. ~ 2020. 3. 2.) 결과 : 의견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북카페 두런두런 관리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인프라를 구축하여 원도심 활성화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북카페 두런두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 및 위치) 이 조례의 적용대상의 명칭은 북카페 두런두런(이하 “북카페”라 한다)으로 하고, 위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하리 42번지에 둔다.

제3조(운영 및 관리) ① 북카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관리·운영한다.

② 전항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북카페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
2. 북카페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
3. 주민 참여·체험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무
4. 그 밖에 북카페 설치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무

제4조(문화강좌 운영) 군수는 지역문화발전과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, 복지 증진, 독서진흥과 각 분야의 지식·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북카페에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.

제5조(사무의 위임) 군수는 북카페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제3조제2항 각 호 사무 및 제4조에 따른 문화강좌 등의 운영사무를 현풍읍장(이하 “읍장”이라 한다)에게 위임한다.

제6조(사용허가) ① 북카페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읍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고, 읍장은 북카페 시설의 관리·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접수 순위가 빠른 사람이 우선한다.

제7조(사용허가 취소) 읍장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(이하 “공유재산법”이라 한다)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정한 사유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제8조(사용료 및 수강료) ① 읍장은 북카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용료를,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나 수강료(이하 “사용료 등”이라 한다)는 별표 1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사용료 등을 징수할 때는 이를 수입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.

제9조(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) ①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.

1. 국가나 대구시 또는 달성군이 주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
2. 국가나 대구시 또는 달성군이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타 기관이나 단체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행사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등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

3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
4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
5.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.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
6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
7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8.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
9.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③ 제9조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 없다.

④ 사용료등을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이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등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
제10조(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) 사용허가의 취소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2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

제11조(권리양도 등 제한)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읍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.

제12조(변상 및 배상책임) ① 사용자 및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북카페 시설물 또는 설비·장비 등을 분실·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.

② 사용자 및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북카페 자료·비품을 훼손·분실하였을 때는 동일한 자료·비품으로 변상하게 하고, 동일한 자료·비품으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.

③ 사용자 및 이용자의 부주의로 북카페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 및 이용자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진다.

제13조(이용신청) 북카페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
이용 및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읍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사용료 및 수강료(제8조제2항 관련)

1) 프로그램 수강료

구분	기준	수강료	비고
문화강좌	주1회 1개월	50,000원	1회는 2시간 이내
기타	· 위 범위에서 프로그램별 기준액은 규칙으로 정함 · 운영시간에 증감이 있을 경우 수강료는 기준액에 비례하여 증감할 수 있음 · 교재 및 재료비 별도		

2) 시설사용료

구분	기준	사용료	비고
회의실 또는 강의실	1일	10,000원	1일은 북카페 1일 운영시간 동안을 말함
기타	· 위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함 · 회의실과 강의실은 별도임		

[별표 2]

사용료 등 반환기준(제10조 관련)

구 분		반환사유 발생일	반환금액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5조제2항에 정한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		사용·수강을 할 수 없거나 사용·수강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	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정한 사유로 인해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또는 사용자 또는 수강자가 본인의 의사로 사용 또는 수강을 포기한 경우	사용 또는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	사용·수강 시작 전	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의 전액
		총 사용·수강시간의 1/3 경과 전	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		총 사용·수강시간의 1/2 경과 전	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	사용 또는 수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	총 사용·수강시간의 1/2 경과 후	반환하지 않음
		사용·수강 시작 전	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의 전액
		사용·수강 시작 후	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사용료 등(사용·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사용료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
비고 : 총 사용·수강시간은 사용·수강기간 중의 총 사용·수강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사용·수강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이용 및 수강 신청서

성명		성별	남 / 여	주소 (학교)		
생년월일		직업 (학년)		연락처		
신청강좌						
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북카페 두런두런 관리 및 운영 조례」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및 수강 신청합니다.						
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날인) ○○ 귀하						

이용 및 수강 접수증

성명		주소 (학교)			이용 및 수강내용
생년월일		직업 (학년)		성별	남 / 여
귀하가 신청하신 이용 및 강좌 수강신청을 접수합니다. 년 월 일 ○○○ (인)					

※ 접수증은 전산에 의한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.

비 용 추 계 서

1. 사업개요

가. 기 간 : 2020년 ~ 계속추진

나. 주요내용 : 북카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3조)

- 지역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북카페를 설치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

2. 비용발생 요인

- 시설 건물 운영과 유지 및 프로그램 운영 시 드는 비용

3. 관련조문 :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5조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 : 북카페 운영 및 주민참여·체험 프로그램 관리 비용

나. 추계 결과 : **합계 연 184백만원 정도**

○ 인건비 : 33,784,000원

- 무기계약직(북카페 운영 및 프로그램 관리) 1인 : 33,784,000원

○ 사무관리비 : 146,288,000원

- 운 영 비 : 174,000원 × 12월 = 2,088,000원
- 강 사 료 : 300,000원 × 3회 × 150일 = 135,000,000원
- 사무관리비 : 300,000원 × 12월 × 90% = 3,240,000원
- 홍보물 제작 : 5,000,000원 × 1회 = 5,000,000원
- 정수기 임차료 : 40,000원 × 2개소 × 12월 = 960,000원

○ 공공운영비 : 4,200,000원

- 공공요금 : 100,000원 × 12월 = 1,200,000원
- 시설장비유지비 = 3,000,000원

다. 재원조달방안 : 자체예산 반영

5. 연도별 비용추계표 : 별첨

6. 작성자 : 교통과 교통시설팀 정하나

[별 지]

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0년)	2차년도 (2021년)	3차년도 (2022년)	4차년도 (2023년)	5차년도 (2024년)	계
세 입							
세 출		184,272	184,272	184,272	184,272	184,272	921,360
북카페 두런두런 활성화		184,272	184,272	184,272	184,272	184,272	921,360
재원 조달		184,272	184,272	184,272	184,272	184,272	921,360
의존 재원	소 계						
	보조금						
	지방교부세						
자체 수입	소 계						
	지방세						
	세외수입						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							
군비		184,272	184,272	184,272	184,272	184,272	921,360
기 타 (차입금, 만자, 예비비 등)							

□ 국가균형발전 특별법

제15조(지역문화·관광의 육성 및 환경 보전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화·관광 육성 및 환경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1. 지역의 문화 및 관광자원의 개발·기반조성에 관한 사항
2. 지역의 문화 및 관광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
3. 지역의 문화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
4.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
5. 지역고유의 정신문화 및 지역가지 발굴·선양에 관한 사항
6. 지역 생태복원, 자연환경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지역의 문화·관광 육성 및 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